

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'89.5월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되어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던중 '92.12.31. 조례개정으로 '95.12.31. 까지 연장되었으나,
- 현재 추진중인 청주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다시 1년간 시한연장이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공영개발사업단 시한연장

1995. 12. 31 ⇒ 1996. 12. 31.

3.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, 제19조

- 덧붙임
1.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
 2. 신구조문대비표 1부.
 3. 기타참고자료 1부. 끝.

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(조례 제1712호, 1989. 5. 13) 제2항중 "1995년 12월 31일"을
"1996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